

##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박희원 전임연구원(parkheewon@kdb.co.kr)

- I. 가업승계의 개념 및 유형
- II.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슈
- III. 국내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 IV.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향후 대응방향
- V. 시사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를 이끌어 온 소위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최근 은퇴시기를 맞이하였으나,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日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처럼 경영자 은퇴에 따른 중소기업 폐업 급증으로 2025년까지 10년간 약 650만명의 고용과 약 22조엔의 GDP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찍이 법·세제, 금융지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실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이슈가 일본만큼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인구구조(고령화) 및 기업구조(가족기업)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주로 세제지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세제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는 지원요건 등이 다소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제지원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나, 중소기업 후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등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은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M&A에 주목하며 가업승계형 M&A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PEF·대기업 역할 강화, M&A 중개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M&A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가업승계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세무자문 등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 I. 가업승계의 개념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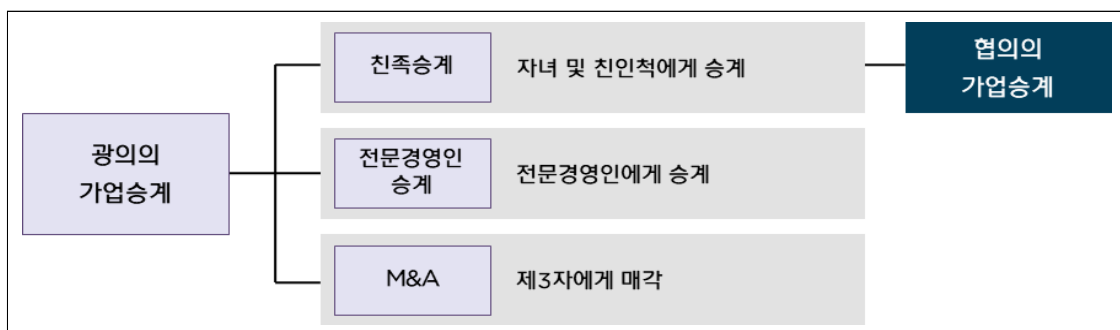
□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sup>1)</sup>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많아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소유권 승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가업승계는 단순히 기업의 재산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이전하는 것을 의미<sup>2)</sup>

□ 가업승계는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친족승계, 전문경영인 승계, M&A로 구분

- 협의의 가업승계는 친족승계만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전문경영인 승계, M&A를 포함하는 광의의 가업승계 개념으로 접근
  - 친족승계는 소유권이 자녀 및 친인척 등 가족 간에 승계되는 것으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인 승계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그림 1〉 가업승계의 유형



자료 : 가업승계지원센터(2018.9)를 참고하여 재구성

1) 기업승계, 사업승계, 사업계승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로 지칭되고 있어 '가업승계'라 주로 불리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주로 '사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가업승계지원센터(2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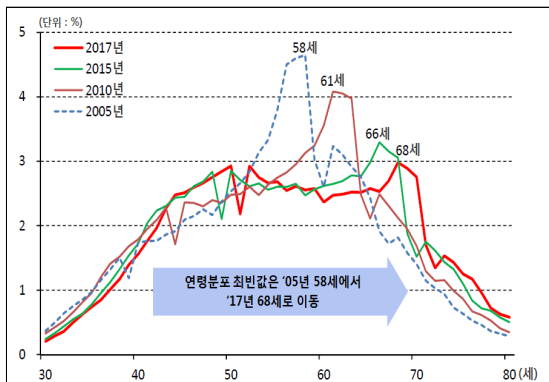
## II.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슈

### 1.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 □ 심각해지는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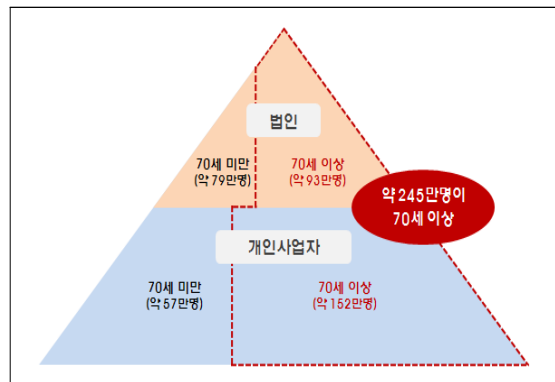
-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분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은 2005년 58세에서 2017년 68세로 변화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sup>3)</sup>
- 日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전체의 약 60%인 24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sup>4)</sup>

〈그림 2〉 日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분포



자료 : Bank of Japan(2018.11)

〈그림 3〉 日 중소기업 경영자의 2025년 연령구성



자료 : 日 경제산업성(2017.10)

#### □ 경영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업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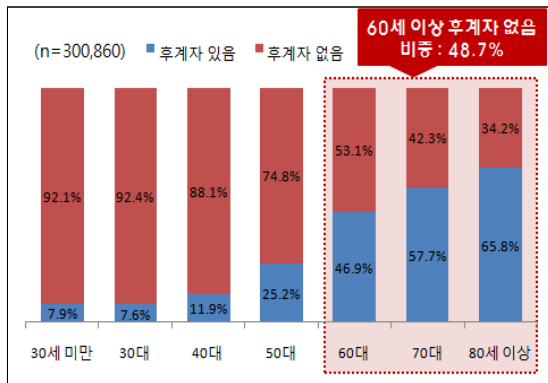
- 저출산에 따른 자녀 수의 감소, 자녀들의 전통산업 기피, 자녀들의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후계자 선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日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5년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 245만명 중 약 절반인 127만명이 현재 후계자 미정인 상태<sup>4)</sup>

3) (1995년) 47세 → (2005년) 58세 → (2017년) 68세

4) 日 경제산업성(20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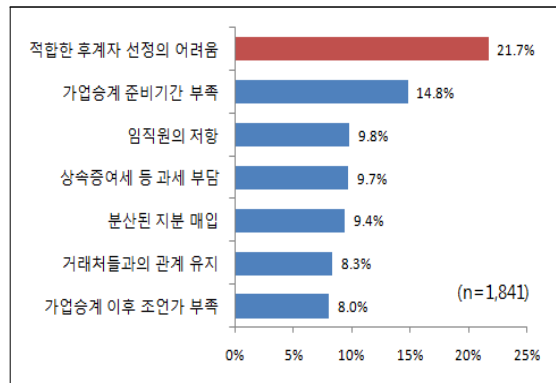
- 日 중소기업청의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60세 이상 일본기업 경영자의 약 절반(48.7%)이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동 기관의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가업승계의 애로요인으로 ‘적합한 후계자 선정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4> 日 경영자 연령별 후계자 유무



자료 : 日 중소기업청(2018.4)

<그림 5> 日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애로요인



자료 : 日 중소기업청(20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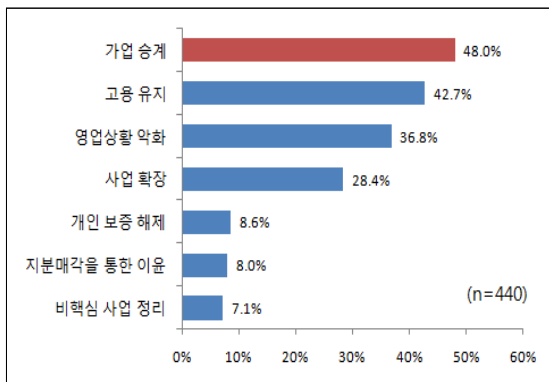
### □ 가업승계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흑자폐업 문제 대두

- 최근에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흑자상태에서도 폐업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
  - 日 중소기업청의 2017년 설문조사에 나타난 폐업예정 기업의 폐업사유를 보면 ‘후계자 부재’가 33.3%로서, ‘수익성 악화’(37.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日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경영자 은퇴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으로 2025년까지 10년간 고용은 약 650만명, GDP는 약 22조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sup>5)</sup>

□ 최근에는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해결책으로 M&A에 주목함에 따라 기업승계형 M&A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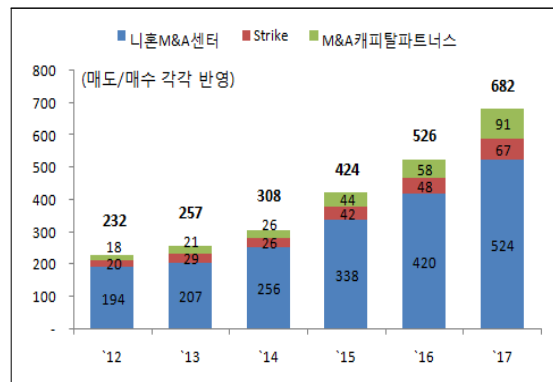
- 최근 일본기업의 M&A 매각 사유로서 ‘기업승계’가 1위를 기록하며, ‘영업상황 악화’, ‘사업 확장’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
  - 낮은 경제성장세, 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 외부환경 악화로 기업승계형 M&A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M&A 전문중개기관들이 잇따라 출현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으로 니혼M&A센터(\*91년 설립), Strike(\*97년 설립), M&A캐피탈파트너스(\*05년 설립) 등 3사가 있으며, 이들의 M&A 계약 건수는 2012년 232건에서 2017년 682건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
- 일본 정부도 M&A를 기업승계 수단으로 적극 인정하여 2018년부터 세제우대 (사업양도의 경우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인하) 등을 지원

〈그림 6〉 일본기업 M&A 매각 사유(\*17년)



자료 : 日 중소기업청(2018.4)

〈그림 7〉 日 대표 3개 중개기관 중소기업 M&A 중개 건수



자료 : 각 사 IR 자료

## 2. 가업승계에 대한 대응

### (1) 정부의 대응

#### □ (2005년) 「사업계속펀드」 조성

-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sup>6)</sup>를 통해 지역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계속펀드를 조성
  - 동 펀드는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5.1월 최초 조성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히 조성되고 있음

〈표 1〉 日 사업계속펀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동 기업을 승계하려는 기업
펀드형태	▪ SMRJ가 유한책임조합사원(LP)으로서 펀드 총액의 1/2을 한도로 출자
펀드운영	▪ 민간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사원(GP)으로서 펀드를 운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너 경영자로부터 지분인수 이후 자금지원</li> <li>▪ GP에 의한 경영지원</li> <li>▪ SMRJ는 가업승계 문제 해결, 경영혁신, 신사업 개발 등을 지원</li> </ul>
펀드만기	▪ 12년 이내(3년 이내 연장가능)

자료 : 홍성철·신상철·조봉현(2011.11), SMRJ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 (2008년)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일본 정부의 가업승계 이슈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08.10월 시행)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법의 주된 내용은 ① 민법상의 특례, ② 상속세 유예, ③ 금융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
- 유류분(遺留分)<sup>7)</sup>에 관한 민법상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해 후계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보호

6)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

7)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는 것으로,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법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음(유류분 산정가액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법정 상속비율 × 유류분 비율)

- 생전에 증여한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에 따른 주식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산을 후계자에게 집중
  - 또는 생전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시킴으로써,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후계자의 경영의욕 저하를 방지
- 경영자의 상속 등으로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회사 주식의 80% 해당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를 유예<sup>8)</sup>
- 신고기간 후 5년간 요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납부유예가 지속되며, 5년 경과 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면 납부유예가 지속
- 회사 상속에 의해 분산된 주식 또는 자산의 매입자금,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액 확대 및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지원을 강화
- 일본정책금융공고(JFC)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ODFC)는 후계자 개인에 대해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또는 상속세 납부자금 등을 지원
  - 한편, JFC와 ODFC는 후계자 개인 이외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매입하려는 법인(개인) 등을 대상으로도 주식·사업용 자산 매입자금 등을 지원

□ (2009년) 산업활력법<sup>9)</sup> 개정 당시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을 신설

- 동 계획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 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
- 먼저,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JFC의 특별대출,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SBIC<sup>10)</sup>)의 가업승계 기업 관련 주식보유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
    - SBIC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되어 후계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낮은 경우 장기 안정주주가 되어 후계자를 지원
  - 또한, 산업활력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 시에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를 경감

8)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 5〉 한국과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비교”를 참조

9) 정식 명칭은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법」으로, 1999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극복을 목적으로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활력 재생을 위해 제정

10) SBIC(Small and medium Business Investment and Consultation company)는 1963년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 (2011년) 「사업인계지원센터」 설립

- 일본 정부는 가업승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사업인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센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산업활력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승계상담, M&A 자문 및 중개 등을 실시
  - 센터 수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48개에 이르며, 상담 기업 수 및 가업승계 성사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까지 누적 성사 건수는 2,401건 달성

〈표 2〉 日 사업인계지원센터 지원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센터 수	7	10	16	46	47	48	48	-
상담건수	994	1,634	2,894	4,924	6,292	8,526	11,477	36,741
성사건수	17	33	102	209	430	687	923	2,401

자료 : 日 사업인계지원센터 홈페이지

□ (2018년)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을 ‘사업승계 실시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법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

-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주식수 상한선을 철폐하는 등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

〈표 3〉 日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납부유예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li> </ul>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li> <li>-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li> <li>- (삭제)</li> </ul>
사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이 승계회사의 대표를 계속 역임</li> <li>▪ 상시 종업원 고용을 5년간 평균 80% 이상 유지</li> <li>▪ 상속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최근의 인력난을 감안,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유예 지속 가능</li> <li>▪ (좌동)</li> </ul>

자료 : 김경아(2018.3)를 참고하여 재구성

- 이와 함께 가업승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사업승계진단’을 연 5만건 이상 실시하고, 가업승계 후보를 소개하는 ‘매칭’도 연간 1~2천건 주선할 계획
- 사업승계진단의 경우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지자체별로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세무사 등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승계상담을 통한 사전적이고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

## (2) 금융기관의 대응

### □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가업승계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투자, 컨설팅 등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거래기반 강화를 추진

- 금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의 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과의 거래 관계 확대의 기회로 활용
- 특히, 일본 은행들은 인구감소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가업승계나 M&A자문에 대한 관심을 제고
- 미쓰비시UFJ은행(MUGF)과 미즈호은행의 경우 SMRJ 등과 함께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하고 LP로 참여<sup>11)</sup>
- MUGF 펀드 조성실적(총액기준) : (’05.1) 60억엔, (’10.5) 60억엔, (’18.8) 80억엔
- 미즈호은행 펀드 조성실적(총액기준) : (’11.1) 121.3억엔, (’15.3) 206억엔, (’19.3) 300억엔
-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과 리소나은행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인고객 사업과 개인고객 사업 간의 연계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sup>12)</sup>
- SMBC는 법인고객 니즈와 개인고객 니즈가 교차하는 분야를 공략하는 ‘프라이빗 어드바이저리(PA) 본부’내에 ‘사업승계 비즈니스 사업부’를 설치
- 리소나은행의 가업승계 사업은 개인컨설팅 부문과 기업컨설팅 부문의 겸업체제로 운영

---

11) 미즈호은행의 경우 관계사인 미즈호캐피탈파트너스(주)가 GP로 참여

12) 가령, 가업승계 관련 자문 시 PB사업과 연계하여 퇴직금 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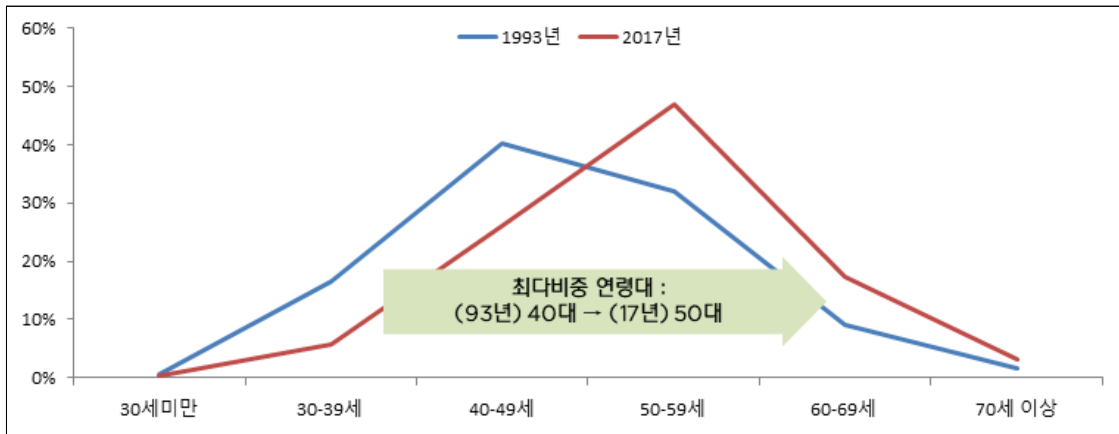
### Ⅲ. 국내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 1.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경영자의 연령분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1993년 40대(40.3%)에서 2017년 50대(47.0%)로 증가<sup>13)</sup>
  - 일본 대비 경영자 연령이 대략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됨
- 대부분이 가족기업 형태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가업승계 문제는 향후 피할 수 없는 중요 경영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그림 8〉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경영자 연령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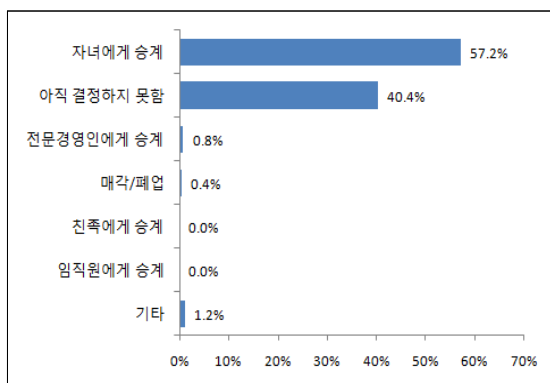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가업승계의 유형은 자녀를 통한 친족승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

13) 평균연령은 1993년 48.2세에서 2017년 53.3세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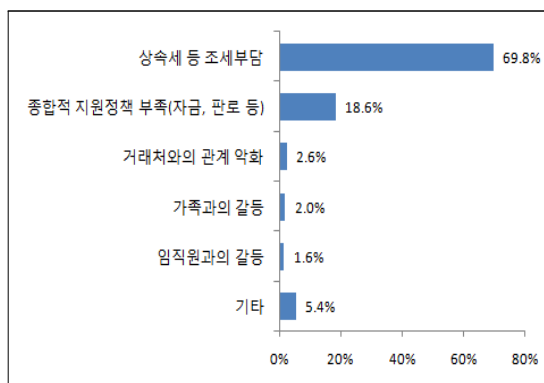
-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sup>14)</sup>에 따르면, 가업승계 방법 중 ‘자녀에게 승계’가 5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69.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그림 9〉 가업승계 방법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8.12)

〈그림 10〉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8.12)

□ 한편,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 중소기업 M&A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M&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오너들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며, 자산과 인력을 한꺼번에 양도·양수한 경험이 없어 M&A에 소극적
- 이에 더해, Deal Size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Deal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기관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자문사 없이 기업 중심으로 M&A가 성사되는 구조
  - 그나마 소규모 Deal의 경우 회계법인 및 M&A 부티크와 같은 개별 브로커들이 참여하고 있음

14) (조사기간) 2018.10.15~2018.11.20, (조사대상)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원 미만(제조업 외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

〈표 4〉 국내 주요 M&A House 특징

구분	주요 특징
외국계 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Big Deal 장악</li> </ul>
국내증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그룹 지원 및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Deal 수주</li> <li>■ 외국계 IB와 공동자문을 통한 Deal 수입</li> </ul>
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업무와의 연계로 다수의 소규모 Deal에 강점</li> </ul>
시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금융 위주로 참여하며 계열 증권사와 협력하는 구조</li> </ul>

자료 : KDB미래전략연구소

-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큰 규모의 가업승계형 M&A<sup>15)</sup>가 잇따라 성사되며 가업승계형 M&A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2. 가업승계에 대한 대응

### □ (1997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토대 마련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 제도로서, 1987년 신설되어 1997년 현재 수준의 제도적 골격을 갖추
  - 업력 10년 이상, 직전 3개년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승계 시, 가업상속재산을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요건, 공제한도, 사후요건 등에서 보다 더 엄격
  -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편<sup>16)</sup>

15) (인수시기) 피인수기업 → 인수기업 : (‘17.8월) 락엔락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17.12월) 유영산업 → VIG파트너스, (‘18.1월) 까사미아 → 신세계, (‘18.5월) 동해기계항공 → JKL파트너스

16)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사후 요건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2014.12월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

〈표 5〉 한국과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비교

항목	한국	일본
기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사업 영위</li> <li>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장 중소기업</li> </ul>
피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li> <li>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li> <li>10년 이상의 기간(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li> <li>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계하는 회사의 대표</li> <li>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 보유</li> <li>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제외하고 최대주주</li> </ul>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li> <li>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li> <li>상속세 과표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취임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li> <li>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이와 상속받은 순자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상속인의 친족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 대표 취임</li> <li>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초과 보유</li> <li>특수관계인 그룹 내에서 최대주주</li> </ul>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장주식 &amp; 상장주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장주식</li> </ul>
공제금액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li> <li>(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li> <li>(30년 이상) 500억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사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업상속 이후 10년간 다음의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5년 이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li> <li>주된 업종 유지(일정 요건 충족시 소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li> <li>1년 이상 휴·폐업 금지</li> </ul> </li> <li>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처분 또는 종자 시 실권에 따른 지분을 감소 금지</li> <li>각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년도 평균의 80% 이상 유지</li> <li>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년도 평균의 100% 유지(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 유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속인이 승계회사의 대표를 계속 역임</li> <li>상시 종업원 고용을 5년간 평균 80% 이상 유지</li> <li>상속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li> </ul>

자료 : 국세청(2018.4), 김경아(2018.3)를 참고하여 재구성

□ (1997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도입

- 연부연납 제도는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5년)보다 더 장기(10년~20년)로 운영

□ (2005년)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하나,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음

□ (2008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의 증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 해당 규정 적용 시 일반적인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담

□ (2018년) 현 정부 들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제요건이 다소 엄격해짐<sup>17)</sup>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상속세액 보다 2배 이상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또한, 500억원의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는 가업영위기간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

17) 다만, 2019.3월 기획재정부의 「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에 따르면, 가업승계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연내 발표될 예정

## IV.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향후 대응방향

### 1. 세제측면의 지원

□ 세제지원의 문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중소기업 후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문제는 중소기업의 계속적 유지 및 성장을 통해 고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과세형평성 및 상속인에 대한 부의 집중 우려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업의 세대 간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사례에 대한 장기적 검토도 필요

○ 또한, 세제부담이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일 뿐 아니라, 갑작스런 가업승계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 한편, 현재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공제건수가 지난 7년간 연평균 68건에 불과한 등 이용실적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단순한 요건 완화보다는 어떠한 방식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유지 노력과 사후적 실천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

〈표 6〉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공제건수	46	58	70	68	67	76	91	68
공제금액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1,386
건당금액	7.1	5.9	13.3	14.5	25.5	41.9	24.5	20.4

자료 : 국세통계연보

## 2. 사회적 인식 제고

### □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등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결여와 도덕적 해이, 불법상속 등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편
  -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고 가업승계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sup>18)</sup>
- 특히, 중소기업 스스로도 적합한 후계자 양성 및 투명한 가업승계 절차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중요
  - 정부 등은 가업승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유능한 중소기업 경영 후계자 양성 등을 지원할 필요

## 3. 중소기업 M&A 활성화

### □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매수 동기와 역량을 갖춘 PEF와 대기업의 역할 강화가 중요

- 우리나라 M&A 시장에서 PEF의 역할과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바 중소기업 M&A에 대해서도 PEF의 참여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하는 ‘성장전략 M&A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
  - 동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Deal 중에서도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Deal에 대한 투자를 유인·확대할 필요

18) 이와 관련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독일의 「넥스트(Nexxt)」 캠페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동 캠페인은 독일에서도 전통적으로 기업 및 기업의 상속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많이 존재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 참여기관은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포함하여 각종 협회, 은행 등이며, 사회적 인식 제고, 정보제공, 네트워킹, M&A자문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임

〈표 7〉 성장전략 M&A 펀드 조성 규모('19.3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펀드 개수	결성 금액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투자기업 수	투자금액
9	13,401	5,000	80	10,503

자료 :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

- 한편, 대기업들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모색
  -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체 R&D를 통한 기술획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나<sup>19)</sup>,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M&A 활용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다만, 현재 대기업 M&A 관련 규제 및 反M&A 정서 등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는 바, 세제혜택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리스크 경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또한, M&A 최초 상담부터 최종 성사까지 거래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M&A 중개인프라를 강화할 필요

- M&A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나, 중소형 M&A의 경우 PEF 및 Major 자문사들의 참여가 저조
  - 정부는 2009.9월부터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를 지정하여<sup>20)</sup> 무료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매물정보 제공과 소개업무 등에 제한됨에 따라 최종 성사 단계까지 중개기능은 다소 미흡
- 앞서 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전문화·차별화된 중소기업 M&A 중개인프라 구축 및 육성이 필요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다수의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보유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

19) 국내기업 대상 실태조사('15.12, KIAT) 결과 84.5%가 자체개발을 통해 기술 획득

2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사)벤처기업협회, 삼일회계법인, 신용보증기금,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 등 8개 기관

## V. 시사점

□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이슈가 주로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 일본의 경우 ‘후계자 부재’ 자체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높은 상속세 부담 등이 주된 이슈로 제기
  - 그러나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 창업자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일본처럼 후계자 부재 이슈가 점차 부각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세제지원뿐 아니라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중소기업 역시 가업승계를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목표와 실천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

□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국내 은행권의 가업승계 관련 서비스는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 역시 대부분 절세전략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종합적 솔루션 제공 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가업승계를 상속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일체의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은행이 가업승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한층 광범위하게 될 것임
    - M&A자문, 인수금융, 후계자 납세자금 대출 및 승계기업 운영자금 대출, PB업무 등
- 따라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서비스를 고객과의 관계기반 강화 수단 등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가업승계지원센터(2018.9),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해설”
- 국세청(2018.4),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기획재정부(2019.3.18), “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
- 김경아(2018.3), “국내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연구”, 중견기업연구원
- 송훈(2008.6), “일본 주요은행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동향과 시사점”, 전국은행연합회
- 중소기업연구원(2015.8),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중앙회(2018.12),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한국은행(2011.1),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과 시사점”
- 홍성철·신상철·조봉현(2011.11),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적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IBK경제연구소(2018.10), “2018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 KPMG 삼정회계법인(2018), “가업승계 세무안내”

### [해외자료]

- Bank of Japan(2018.11), “金融機関における事業承継支援”
- Nihon M&A Center(2019.1), “Results of Operations for the Third Quarter of the Fiscal Year Ending Mar 31, 2019”
- 日 경제산업성(2017.10),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の生産性向上について”
- 日 중소기업청(2018.4),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 \_\_\_\_\_ (2017.4),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 日 社団法人 全國銀行協會(2014.11), “中小企業等の事業承継等支援に關す取組事例集”